

의안번호	2208160
의 퇴 인	고민정 의원
회 답 일	2025.03.06.
추계번호	25C10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의2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2조의3(질환교원의 심의)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질환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2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및 해당 교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52조의5(복직 심의)	(제1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의2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2조의3(질환교원의 심의)	
3	안 제52조의5(복직 심의)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 부산, 경기, 충북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¹⁾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교육청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52조의2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시·도교육청 규칙 내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 따라 현재 설치된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모두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안 제52조의2제2항 단서는 위촉위원에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 참고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원단체 추천인, 학부모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법령에 규정될 전문가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5는 각급학교의 장이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각각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개최 횟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수와 개최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가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관련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52조의3제2항과 안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 총액임
- 그러나, 안 제52조의3제2항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질환교원의 정의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현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위원회 개최 횟수를 예측하기 어려움
 - 대통령령이 시·도교육청 규칙과 동일하게 질환교원을 정의한다면, 개정안의 규정은 규칙을 상향 입법하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2조의5제1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한 복직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질병휴직위원회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므로 지출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안 제52조의5제1항의 심의는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므로²⁾

2)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2조(설치 및 기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능의 조정, 통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존 질병휴직위원회의 개편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변동할 수 있음
- 참고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교육청은 이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
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2.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지역	현원	내부위원	위촉위원
서울	13	4	9
부산	15	5	10
대구	10	4	6
인천	10	3	7
광주	11	4	7
대전	9	3	7
울산	10	4	6
세종	7	1	8
경기	9	4	5
강원	10	2	8
충북	7	3	4
충남	10	3	7
전북	12	5	7
전남	9	3	7
경북	9	3	6
경남	13	5	8
제주	9	4	5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임

2. 경북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구성원임

3. 위촉위원은 교육청별 구체사항에 차이는 있으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원단체 추천인, 학부 모단체 대표 등이 해당함

자료: 각 시·도교육청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 관련 위원회 심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서울	—	2	5	7
부산	—	1	—	1
대구	—	—	—	0
인천	2	2	9	13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	1	2	3
세종	—	—	—	0
경기	—	2	3	5
강원	—	—	—	0
충북	—	1	6	7
충남	—	3	3	6
전북	2	3	3	8
전남	—	—	1	1
경북	—	2	8	10
경남	—	—	1	1
제주	—	3	—	3
합계	4	20	41	65

주: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건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